

장애인의 고등교육사에 대한 문화기술적 고찰*

곽 정 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보장 및 장애학생지원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 2008년까지 장애인의 고등교육 관련한 각종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사는 부분적 입학 허용의 시기(해방이후 고등교육성립초기-1994), 형식적 기회확대의 시기(1995-현재), 장애학생지원의 등장 시기(2000년대-현재)를 거쳐 전개되었다. 장애학생지원은 사명감, 헌신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동원이라는 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은 배제에서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장애학생지원체제는 비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학사지원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주제어 : 장애인 고등교육사, 장애학생지원

1. 서론

1. 문제제기

이제까지 대부분의 학교 교육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두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높은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과연 장애인의 고등교육 보장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교육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등교육 보장은 교육불평등 해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은 82.8%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07). 이것은 고등교육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제 대학 졸업장은 취업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약 고등교

*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greenf30@hanmail.net)

육보장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등교육 소외 집단은 상대적으로 취업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취업의 불리는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사회문화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놓이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고등교육이 사회 진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만약 고등교육 보장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정 집단의 문화이데올로기가 부지불식간에 전승 유포되어 버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고등교육과 장애인을 연결시켜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자는 고등교육 성립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고등교육사를 개관하고, 고등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의 현재 위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형성 과정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현재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개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실태와 장애인의 만족도 조사(김헬레나, 2000; 김주영, 2005;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김정진, 2004, 2007)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적 개관은 이와 같은 연구들에게서 나타난 문제점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장애인의 고등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관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은 문헌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 고등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D대학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D대학은 대학 설립 초기부터 장애인 재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최초로 설립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관하기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이하 특례입학제도)를 하나의 기점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특례입학제도 실시가 장애인의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성립초기부터 2008년까지 장애인의 고등교육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각종 통계, 교육부의 자료, D대학의 장애학생관련 데이터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의 의미를 삶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하기 위해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6명이며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구분	성명	장애유무/유형	특성
참여자	윤OO	맹	1981년 D대학 입학 현재 D대학 직원
	최OO	지체1급(소아마비)	1977년 D대학 입학 현재 D대학 부속학교 교사
	김OO	비장애	2001년도부터 장애학생지원센터근무
	이OO	비장애	2001년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당시 소장
보조 참여자	장애인운동가 1명,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관련담당자 1명		

II. 특례입학실시 이전의 장애인의 고등교육

1. 고등교육 성립 초기의 장애인의 대학 입학 상황

해방 이후 고등교육 성립 이후 장애인 고등교육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통계,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통계, 관련 논문 등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67년 문교통계년보에서 특수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

구분	고등부졸업자		진학자	
	계	여	계	여
계	45	8	11	1
맹학교	28	7	10	1
농아학교	17	1	1	-
맹아학교	-	-	-	-
기타	-	-	-	-
시도별				
서울	41	7	9	1
경북	4	1	2	-

문교부(1967). 문교통계년보, p.488. 취업상황은 생략하였음.

1962년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문교부는 처음으로 초, 중등학교, 대학교, 기타학교(특수학교 포함)에 대한 각종 현황들을 나타내고 있는 문교통계요람을 발간

하기 시작하였다. 문교통계요람은 1965년 문교통계년보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67년부터 특수학교 졸업자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자료는 장애인의 진학 상황이 제시된 교육부의 최초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이다. 특수학교에 전공과가 생긴 것은 1994년이므로¹⁾, 표 2에 제시된 진학자들은 초급대학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자료는 특수학교 졸업자의 현황이기 때문에 일반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 고시 출신 장애인의 대학 입학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통합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967년 당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자는 45명이며, 이 중 진학자는 11명(24.4%)이다. 진학자 중 맹학교 졸업자는 90.1%이다.

이 외에 1960년대 장애인의 고등교육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특수교육연구’ 창간호에 실린 안태윤(1968)의 ‘한국 맹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일연구’가 있다. 안태윤은 표 3과 같이 대학별 맹인 재학생수를 밝히고 있다.

<표 3> 대학별 맹인 재학생수

대학명	졸업	재학	대학명	졸업	재학	대학명	졸업	재학
건국대학교	4	2	명지대학		1	이화여자대학교	1	
경북대학교	1		부산신학교		1	중앙대학교	7	1
경희대학교	1		삼육신학대학		1	총회신학교	5	
계명대학	1	1	서울성서대학	1	1	춘천대학		1
고려대학교	2		서울여자대학	1		충남대학교	1	
국민대학	5		서울신학대학	1		한국사회사업대학	7	8
대구신학대학	1	3	서라벌예술대학		1	한국신학대학	1	
대한신학대학	1		송실대학	2		일본유학	3	
대전대학	1	1	연세대학교	4	6	미국유학	1	1
동덕여자대학	1		원광대학		1	계	53	30

안태윤(1968). 한국 맹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일연구, 특수교육연구 1, 1-19,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교육연구소, p.7.

‘특수교육연구’는 D대학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한 특수교육관련 전문학술지이다. 90년대 특례입학 이후 까지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논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태윤의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안태윤은 당시 D

1) 1994년 1월 7일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취업률이 저조한데에 따른 개선책으로 특수학교와 직장과의 연계를 통해 좀 더 적응훈련을 한 후 취업을 나가게 하고 대학 진학이 어려운 중증장애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설치. 특수교육진흥법 21조 관련[전부개정 1994.1.7 법률 제4716호].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맹학생을 중심으로 일일이 맹학생의 구술을 통해 당시 대학을 졸업한 맹인 수, 당시 대학에 다니는 맹인 재학생수를 파악했다. 당시 전국에 10개의 맹학교 고등부를 졸업하는 학생이 20~30명 안팎이었기 때문에 구두로 물어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1968년 당시를 기준으로 대학을 졸업한 맹인은 53명이며 1968년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맹인 재학생은 30명이다. 안태운은 이 연구에서 “맹인을 받아들인 대학의 총수는 26개 대학으로서 대학 총수 148개교의 10.8%만의 대학이 맹인을 대학에 입학시켰거나 입학시키고 있다고 하였다(안태운, ibid, p.7).

2. 1970년대 ~ 1980년대 장애인의 고등교육 현황

1970년대, 80년대의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장애인 운동사(신용호, 2001), 장애인 복지사(송영욱, 1996)에 대한 연구들이 장애인의 대학 입학 거부 사례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문헌에 나타난 장애인의 고등교육 현황

신문에 보도된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신문에 보도된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기사(1966년 ~ 1987년)

일시	사건 개요
1974.1.28	박영범군, 소아마비 이유로 경북대 치의과 불합격
1976.2	장애자라는 이유로 대학입시 30여명 불합격. 2월24일 지체부자유학생·부모 등 1백여명, 비교육적 입학제한 규탄 쫓기대회 가짐. 동일 장애자의 입학제한 철폐.
1977.1.24	박창권군, 서울대 응미과 청각장애를 이유로 탈락. 전국특수학교 교장 30여명, 특수아 대학진학에 대한 긴급 건의문 채택.
1977.2.11	정기석, 구본영군 영남대 약대 지체부자유아라는 이유로 불합격
1977.2.16	YWCA, 장애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탈락된 박창권, 정기석, 구본영의 입학허가에 관한 건의문을 관계요로에 보냄
1980.1.9	예시합격 시각장애자, 대부분의 대학에서 원서접수 거절
1980.11.25	영남대 약대에서 지체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된 도희희(20)양 대구지법에서 합격판정
1982.1.29	장애를 이유로 성대 약대 2명 불합격
1983.1.20	지체부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이희정, 김용학 대입 낙방
1983.3.17	지체부자유라는 이유로 전남대 약대에서 낙방된 김용학군 구제
1984.1.13	지체부자유자 최동락군 장애를 이유로 동국대 낙방
1986.1.22	카톨릭대 소아마비 학생3명 장애이유로 불합격 처분
1987.11.9	정부 88년부터 세무대학에 일정비율의 장애인 입학허용 계획 발표

정립회관 장애자복지연구회(1988). 장애자관련신문자료집 사건일지(pp.1-14)에서 장애인고등교육 관련 사건일지를 발췌 정리한 것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고등교육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장애인의 대학 입학 거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근에는 출현율이 낮은 소아마비 장애인에 대한 입학 거부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70년대 주목할 만 점은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저항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조선일보 1976년 2월 25일자에는 지체부자유학생 70여명과 학부모 50여명이 모여 지체부자유학생의 대학 입학거부를 규탄하는 쉼기 대회를 가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에게 전원구제를 지시함으로써 감격의 환성으로 당시 쉼기대회는 막을 내렸다고 나와 있다(정립회관장애자복지연구회, 1988, p.54).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대학 입학 정황을 알 수 있는 신문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1970년대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기사내용

조선일보 1974년 1월 30일자	맹인들의 대학진학길이 막혀 문제가 된데이어 소아마비학생이 대학입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낙방되었다. 경북대는 28일 74년도 신입생모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문리대치의과에 지원 필담고사에 합격했던 박00군(대전대 줄)을 왼쪽다리가 불구라는이유로 낙방시켰다. 박군은 4세때소아마비를 앓아 왼쪽다리를 약간절름거릴뿐 보행에는 큰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대 천시권 교수처장은 지체부자유아의 합격여부를 관장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금까지 교직과와 의예과에 한해 불구자를 불합격시켜온 관례를 올해 신설된 치의과에도 적용한것뿐이며 치과의사도 의사이기 때문에 불구자는 부적절할 것으로 보고 불합격시켰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1975년 1월 24일자 2면 사설	불구학생들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대학입시에 합격했다는 반가운 소식들이 들린다. 조선대학교에 수석합격한 최00군은 소아마비 불구자였다. 지난해 모대학 의예과를 지망, 필기고사에는 합격했으나 시정위에서 지체부자유자라하여 불합격이된 쓰라린 경험을 겪었었다. 연세대신학과에는 맹인인 이00군이 합격하여 세간의 화제가되었다. 그는 73, 74년 두해에 걸쳐 대입예시에 합격하고도 입학원서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어 응시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
동아일보 1977년 1월 24일	박군은 이번 예시에서 2백 67점의 좋은 성적을 얻어 서울대미대응용미술과에 응시했다. 국어 영어 두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렀고 이어 인물덧상 공예 디자인 입체구성등 어려운 실기시험도 남들못지않게 훌륭히 치러 예능계열의 6백36점만점에 4백점을넘는 상위권성적을 얻었음이 학교당국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박군은 면접시험에서 청력장애로인한농아자로판명 지난 22일 학교측 요구로 서울대부속병원에서 청력테스트를 받아야했다. 박군의 청력은 서울대입학자격 기준인 50데시벨을 초과한 70데시벨로 밝혀져 최종입시사정에서 탈락되고 만 것

신문기사의 실명은 연구자가 변경하였으며, 띄어쓰기는 그대로 따르고, 한자는 음으로 표기하였음. 조선일보 1974년 1월 30일자는 정립회관장애자복지연구회(1988), 장애자관련신문자료집, p.42. 동아일보 1977년 1월 24일은 같은 책 p.60에서 인용

첫 번째 신문기사를 보면 아주 경미한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대학 입학이 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의사, 교사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의 장애인에 대한 입학 거부가 더욱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신문기사에 주목할 점은 1960년도에 이미 맹인의 대학 재학이 상당수 있었지만 여전히 세간에 화제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자료를 보면 국립대학 입학 자격 조건에 장애를 이유로 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앞의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80년대에도 이어졌다. 특히 소아마비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는 끊이지 않았다. 80년대 주목할 만한 점은 세무대학에서 장애인 입학 할당제를 실시한 것이다. 세무대학은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는 2년제 국립대학으로 세무대학 졸업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였다²⁾. 세무대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88년부터 장애인에게 일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학생 정원의 10%를 장애인에게 할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께걸음’지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88년부터 94년 2월까지 36명의 장애인이 입학하여 도중에 2명이 탈락, 29명이 졸업했으며 이들은 국세청 일선기관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박옥순, 1994).

이상으로 문헌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장애인의 대학 입학 정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경도장애인이 소아마비 장애인 조차 대학을 들어가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장애인의 대학 입학 거부 만연한 가운데도 맹학교를 졸업한 맹인들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D대학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업대학에 재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1978과, 1981년 대학에 입학한 장애인의 구술을 통해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애인의 구술을 통해 본 장애인의 고등교육

1981년도에 D대학에 입학한 윤○○(맹, 1981년 영어영문과 입학, 현재 D대학 재직 중)씨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어떤 배려가 있었나요?

윤○○: 배려가 있었다기보다는 받아 주는 게, 그게 배려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 주지를 않았으니까.

연구자: 맹인들이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윤○○: 연세대는 일찍부터 되었고, 기독교 학교였으니까, 지방에서는 D대학이

2) 1980년 설립된 세무대학은 조세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정경제원소속 국립전문대학으로서 재학 중 학비 및 숙식비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 졸업자는 국세청·관세청의 8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다.

알아주고, 그 이외는 잘 없었을 겁니다. 맹인 중에는 신학교를 많이 갔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쪽이 일단 잘 받아 주니까, 신학은 예전부터 맹인이 많이 갔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맹인 목사들이 100명 정도 넘을 겁니다.

윤○○씨의 진술은 안태운의 연구와 흡사한 내용이 많았다. 1960년대의 대학 진학 상황은 1980년대까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윤○○씨에게 대학에서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았다.

연구자: 대학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윤○○: 그 때는 우리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수업은 녹음하고, 친구들이 사전 단어 같은 거는 찾아주기도 하고, 별표 세 개 붙은 단어들은 친구들이 녹음도 많이 해 줬죠.

연구자: 책은 어떻게 하셨나요?

윤○○: YWCA에서 많이 도와 줬죠. 책을 맡기면 아줌마들이 책 한 권을 나눠서 점필로 찍어 줬어요. 서울에 연합세계선교회라고 퍼킨스식 타자기 몇 대 놓고 책을 만들어 줬는데, 책을 한번 맡기면 한 학기가 걸렸어요. 그 책은 내 후배가 잘 봤죠.

연구자: D대학에 맹학생들이 많았나 봐요?

윤○○: 81학번이 약시 합해 가지고 5명, 80학번이 5명, 79학번이 1명, 합해서 11명이 다녔죠.

1960년대 상황을 말해 주는 유일한 연구인 안태운(1968)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대학을 입학한 맹인들은 맹인학생을 위한 교재, 교구 등의 부족, 맹인학생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 부재로 인해 대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안태운, 1968, pp. 18-19). 윤○○씨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대학을 다닌 장애인의 어려움은 1980년대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지체장애인들은 대학을 어떻게 다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978년 D대학에 입학한 지체장애인 최○○(현재 D대학 부설 특수학교 교사)씨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는 지체1급 소아마비 장애인이다(당시 클러치 사용, 대학 졸업 후부터 휠체어 사용함).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래된 아픔을 건드리네요. (큰 소리로 웃음) 그 때는 합격해도, 떨어뜨려 버리는 시대였죠. 내가 1차 필기(성적)는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가니까, '수학능력이 있는지 보자'면서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그 해(1977년)는 대학 입학을 리젝트(reject) 당했어요. 서울에서 재수할 때 친구들이 특기 사항란에 '장애자가 본 대학에 시험을 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명시되어 있는 대학은 D대학 뿐'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죠.

최○○씨의 대화는 표 4.5의 신문기사에서 소개된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D대학은 입학생 모집 요강에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자료는 아니지만, 1993년도 D대학의 신입생모집요강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신체장애자 지원

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배제조건은 없습니다.

* 신체검사 대상학과: 인문대학 체육학과, 미술대학 전학과, 사범대학 전학과 (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치료특수교육과 제외)

나. 신체장애자의 판단기준

(1) 시각장애자(맹인) : 가. 병원장 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나. 고도의 시기능장애자로서 점자에 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2) 시각장애자(약시)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자 중 목자를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자로서 병원장 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3) 뇌성마비 : 손, 목 및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작성이 불가능한 자로서 병원장 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D대학교, 1993, p. 7).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가지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배제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내세울 만큼 당시(1993년) 다른 대학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배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최○○씨의 사례와 같이 전국에서 입학 거부를 당한 장애인들을 D대학으로 불러 모으는데 일종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최○○씨에게 당시 D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체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물어보았다. 최○○씨는 “푸른샘이라고, 지체장애인 연합회가 있었거든요. 내가 4대니까, 한 30명 쯤 되었던 것 같네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없었으며, 대부분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편의시설은 없었으며, 계단을 올라가야 할 때는 친구들이 업어주었다고 했다. 대학이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되자, 신축 건물들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당시 D대학 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이지만³⁾,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입학 배제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대학생화를 통해 편의시설 필요성을 점차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김병하 (2004). 「특수교육개론」(1963)에 나타난 이태영(李泰榮)의 특수교육관,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5(2), 1-24. 참조

이상으로 문헌, 신문, 장애인의 구술을 통해 60년대부터 90년대의 장애인 고등교육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입학에 허용하는 대학은 많지 않은 가운데, ‘신체장애자에 대한 배제조건 없음’을 내건 D대학은 점차 장애인을 받아 주는 대학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D대학은 ‘장애인이 공부를 하려면 D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나 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배제 없음은 당시로서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윤○○씨의 이야기와 같이 신학대학이 맹인의 대학 입학을 거부하지 않음으로 해서 맹인 목사들을 대거 배출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D대학을 나온 장애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전문직에 종사하는 얼마 되지 않는 장애인군에 속할 수 있었던 것 같다.

Ⅲ. 특례입학 제도 실시와 형식적 기회 확대

앞에서 살펴본 1993년도 D대학의 신입생모집요강을 떠올려 본다면—이것은 당시 장애인의 대학입학에 대한 배제가 만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1994년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입학제도는 그야말로 갑자기 등장한 제도였다. 여기에서는 특례입학제도의 실시의 배경, 시행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특례입학제도가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적 승인을 얻은 D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위로부터 만들어진 특례입학제도

1989년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특례입학제도가 최초로 거론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일정비율 장애인의 정원 외 입학에 허용하자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강력해진 장애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당시 정권이 만든 임시적인 대통령 자문 기구이다. 당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올림픽 개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87년 전국을 강타한 민주화 열풍은 장애인들의 의식을 깨우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곽정란, 2003; 김도현, 2007). 당시 정권은 서울올림픽 개최와 올림픽 폐막 이후 개최되는 장애인올림픽인 패럴림픽 개최 등으로 세계의 이목이 주시된 가운데,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정책들을 신속하게 만들어내야만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8년 9월 15일 대통령령에 의거

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1989).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는 천명기(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위원장 이하 19명의 위원(김승국 외 9명의 연구위원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는 1989년 8월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이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복지시설 확충, 교육시설의 개선, 국립특수교육원의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다루면서 교육기회의 확대 일환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해 짧게 언급하였다⁴⁾. 그러나 이 내용들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크게 거론되지는 않았다.

그런 것이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정부에 의해 거론되게 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정책을 정치 기조로 내세우며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 요소로서 사회복지 정책 확충에 관심을 두었다. OECD 가입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개선해야만 했다(이현준, 1995; 남지민, 2006). 이를 위해 여러 사회복지 정책들이 입안되었는데, 당시 교육부에서는 1994년 1월 24일 업무 보고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원 외 특례입학제도 신설 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장애인의 정원 외 입학의 골자로 하는 기회 확대는 행정적 조치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었으므로 곧바로 이 정책은 시행 절차를 밟게 되었다. 교육부는 1994년 8월 4일 중증 장애인 특례입학 등 교육법시행령 및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박옥순, 1994)⁵⁾.

특례입학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계 뿐 아니라, 장애인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A교수(○○대 특수교육과)는 “특례입학 제도로 수학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교나 학우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면 좌절감에 빠질 수 있으며,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 모두를 싸잡아 특례입학 학생으로 오해함은 물론 장애학생을 영원한 사회적 저능아로 낙인찍을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 제도는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청각장애자 복지회의 B과장은 “장애인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입학 후 수화통역자가 필요한 청각장애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며 따라서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박옥순, 1994)⁶⁾. 당시 장애인계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파

4)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정원 외로라도 일정 비율의 수학능력이 있는 장애자에게 입학의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과,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장애자의 입학지원이나 입학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불이익처분의 금지 등)의 감독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입학의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1989, pp.71-72).

5) 장애인의 선발 방법은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장애인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95학년도부터 현행의 대학입학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학의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례입학으로 인하여 일반학생들의 대학 입학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특례입학 인원은 정원 외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악하기 위해 이 기사를 썼던 박옥순씨와 전화 인터뷰를 해 보았다. 박옥순씨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학교 상황이나 입시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 전형이라는 제도에 의해 장애인이 마치 능력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교육 환경은 정비하지는 않으면서 김영삼 정부 때 만들었던 지하철 무임승차처럼, 특혜 준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일종의 시혜적인 정책이라고 해야 하나요. 당시는 이 제도를 환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었죠.

당시 장애인계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보다 대학 시험을 보기 이전에 통합을 비롯한 교육환경이 정비되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만을 우대하는 특별정책에 대한 반감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대학 시험을 보기까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장애인계는 이 제도 입안 자체를 반대하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만들어진 특례입학제도는 당시 장애인들의 요구와 견제 속에 만들어진 여러 정책이나 관련 법규와는 달리⁷⁾, 위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2. 행정적 조치에 그친 특례입학제도

여기서는 장애인계나 특수교육계의 우려 속에 출발한 특례입학제도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대학입학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일선 대학에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대학에 재정지원을 위해 올린 예산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삭감(이동석, 1996)되었기 때문에 일선 대학에 재정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특례입학도입 당시에 우려되었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지원은 고려에서 그쳐 버렸다. 특례입학을 통해 장애학생은 선발하되 선발한 장애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 배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였다. 조한진, 박태영(1998)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특례입학을 실시한 대부분의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당시 대학을 다닌 장애학생의 90% 이상이 대학생활에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6) 기사에 나온 실명은 이니셜로 바꾸었음.

7)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진 장애인의 요구들은 이후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90년에는 장애인의 고용을 일정 비율 이상 강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었다(김도현, 2007)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방식은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없는 학교 재정이 열악한 대학은 특례입학 제도 시행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와 같은 교육부의 조치—일선 대학에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는 중용하면서, 그 책임은 일선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재정 규모가 되는 학교의 지원마저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3. 특례입학제도의 가시적인 성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례입학제도는 시행 단계에서부터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성과를 내었다. 하나는 장애인의 입학 허용한 대학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학에 입학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⁸⁾. 특례입학 제도 시행 이전에 대학을 다닌 장애인의 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특례입학 제도의 실시 이후 대학에 입학하게 된 장애인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제시할 수 없다. 연구자는 특례입학 제도 이전의 장애인 대학 입학 수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의 관계자와 몇 번 통화를 했으나, 그들 역시 그 이전의 자료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이것은 특례입학제도라는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례입학제도라는 중요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에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업무를 보는 주무관이 배치된 것은 2002년이다. 몇 년도에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담당자가 생겼습니까?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글쎄요. 애매하네요. 지금 주무관도 장애인 고등교육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니까, 장애인 고등교육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전담자는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특례입학 실시 이전의 데이터를 구할 수는 없지만, 특례입학제도 실시 이전의 보도 자료와 앞에서 살펴본 장애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특례입학제도 실시 이후 대학에 들어간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특례입학실시 이후의 장애학생 입학 수의 추이와 특례입학을 실시한 대학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8) 특례입학제도가 가져 온 또 하나의 성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의 고등교육이 국가의 교육 정책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윤점룡, 김주영, 2002, p.22). 정부에서는 일반고등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교육진흥정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접 국립대학(‘한국재활복지대학’ 경기도 평택시 소재, 2002년 개교)을 설립함으로써,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경우 장애 관련 전문가들의 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일선 대학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표 6>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 교, 명)

학년도	전문대학		대학교		합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1995	2	6	6	107	8	113
1996	2	16	16	201	18	217
1997	6	42	30	234	36	276
1998	6	57	39	298	45	355
1999	6	47	40	349	46	396
2000	9	55	48	313	57	368
2001	11	61	43	360	54	421
2002	15	194	46	420	61	614
2003	14	117	47	310	61	427
2004	24	115	49	309	73	424
2005	11	45	53	344	64	389
2006	10	31	63	388	73	419
2007	9	79	71	439	80	518
2008	8	100	74	460	82	560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7.

특례입학제도는 앞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를 거듭하면서 실시대학이 증가하였다. 1995년 6개 대학에서 2000년 48개 대학, 2005년에는 53개 대학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시행 첫 해와 비교 해 10여배가 증가하여 전국의 71 대학이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한 장애인의 대학 입학 수는 특례입학제도가 장애인의 대학입학 기회 확대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특례입학제도의 한계: 특정 대학에 편중된 장애학생 입학

위의 표 6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례입학 실시대학 수의 증가에 비해 장애인 수의 증가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정 대학에 장애인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례입학 실시 학교별 입학 인원수를 살펴보면 표 7와 같다.

<표 7> 특례입학 실시 학교별 입학 인원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1
공주대학교		1	1	25	6	5	4	4
삼척대학교			4	4	3	6	8	6
서울대학교								7
제주대학교		2	4	4	5	3	8	9
창원대학교			2	1	2	2	5	5

<표 7> 특례입학 실시 학교별 입학 인원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1
충북대학교								
가톨릭대학교							1	12
감리교신학대학교				1	1	3	3	18
강남대학교		35	22	22	40	41	21	18
건국대학교				13	3	19	1	11
고려대학교					10	14	11	9
나사렛대학교		2			10	14	35	16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7	12	15	28	25
대구대학교	44	57	55	67	84	83	81	82
대불대학교				3	1	1	2	
동국대학교				2	6	6	6	1
동명정보대학교		6		8	6	3	6	8
목원대학교							2	1
삼육대학교							6	6
상명대학교		1		3	4		2	
서강대학교	18	5		2	1	2	8	8
서울신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1
숙명여자대학교						6	8	6
숭실대학교				2	6	2	2	2
신라대학교		8		16	21	16	18	29
연세대학교	12	19		9	4	7	5	10
용인대학교				1		1	1	2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3	5		1	1	3	5	1
예원대학교								1
원광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1			1			1	
전주대학교				8	10	5	2	4
조선대학교				6	4	6	6	5
중부대학교				2	5	3	10	10
중앙대학교				1	2		2	1
청운대학교		4		2	1	5	6	11
한림대학교				2	1		4	
한양대학교				18	17	5	2	11
호원대학교				1			1	1

윤점룡, 김주영(200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최종보고서, p. 307.

위의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례입학제도 실시 이후 일부 대학에 장애인이 더 많이 입학한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D대학의 년도별 장애학생 재학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2004년 나대학 모집요강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시각, 청각, 언어장애자를 제외한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중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2007년 다대학 모집요강

이 내용들은 연구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찾아낸 모집요강의 내용이다. 윤점룡, 김주영(2002)은 특례입학 제도 실시 이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장애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행을 다음과 같이 특징화 하고 있다.

- 각 대학별로 선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장애인 심사위원회’ 등의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한다.
- 검증된 객관적 기준이 아닌 대학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담실에서 사전면접을 거쳐야 한다.
- 사전면접을 통해 ‘학교에 아무런 교육시설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나 합의서를 요구한다.
- ‘제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장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p.25).

이와 같은 관행은 특례입학으로 장애학생의 입학은 허용하지만, 학업 성취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대한 우선적 선별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피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례입학제도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했다. 결국,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대학 선택의 폭은 제한되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입학 제한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선택의 폭이 제한된 중증장애인들은 D대학을 선택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등급별 특례입학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1급 장애학생 중 22%가, 2급 장애학생 중 15.2%가 D대학에 입학했다. 이 시기에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중 1급 장애학생은 486명이며, 2급은 760명이다. 이 기간에 D대학에 들어온 1급 장애학생은 111명이며, 2급은 116명이다.

5. 정부의 때 늦은 개입과 그 한계

앞에서 특례입학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례입학제도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에는 기여하고 있었지만 장애인의 대학 생활 전반에 필수적인 지

원 체계를 구안하지 못함으로써 형식적인 기회확대만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선 대학들의 중증장애학생 기피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형식적인 기회확대 조차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2001년 S대학을 다니던 한 지체장애 여학생은 대학의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 받았으며 ‘장애인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휠체어에 들러 4층에 있는 강의실을 올라가야 했던 현실에 대한 몇 차례의 현장 검증을 거쳐, 지체장애학생은 승소하게 되었다(신운동옥, 2001). 소송 제기 이후 1년 4개월 동안 수차례의 서면 공방과 휠체어에 들러 대학건물 4층 강의실까지 올라가야 하는 몇 차례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2002년 7월 26일 이 학생은 승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학 및 교육부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적 상황과 소극적 대응에 대하여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사건 이후 교육부는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보장 실태파악 등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처음으로 ‘대학내 장애인 교육복지 실태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태평가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장애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선 대학이 올린 자체평가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 검증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태평가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형수, 2005). 지원실태평가는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8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3년 후인 2011년에 실시 예정이다.

2003년 실태조사에 이어 교육부는 2004년 8월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부터 장애학생 도우미 경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장애학생 도우미 경비 지원은 실태평가 결과 보통이상 평가를 받은 대학의 도우미 등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급 이상의 중증 장애학생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도우미에 대한 지원액은 2006년까지는 중증장애학생 1명당 도우미 1명 기준으로 연 200만원, 2007년부터는 동일 기준에 도우미 경비는 월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도우미 경비 지원은 전액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고 70%, 대학 대응투자 30%를 지원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와 같은 변화는 특례입학 시행 초기에 비한다면 많은 발전을 한 것이지만, 도우미 경비 지원에 한정된 교육부의 지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학교의 편의시설 및 교육 기자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 둘째는 중증장애학생 1인당 1명으로 제한된 도우미 경비로는 중증장애학생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다, 셋째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 점역사, 수화통역사, 속기사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지원 이외에 최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4.10 법률 8341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2007.5.25 법률 8483

호)에서도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1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여, 특별지원위원회(29조), 장애학생위원회(30조), 편의제공 등(31조), 학칙 등의 작성(32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은 앞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은 고등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 기구의 힘이 강력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그 내용이 일반적 일 뿐 아니라,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직원의 수와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이들 법률은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학의 경우는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자칫 하향평준화의 가능성마저 야기할 수 있다.

IV. 최초의 장애학생지원센터

1. 장애학생들의 높은 중도탈락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대학에는 특례입학 제도 실시로 중증장애인의 대거 입학 하게 되었다. 이것은 장애학생이 알아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례입학 이전에 대학에 들어 온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학 기준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학력격차가 없었지만,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D대학에 들어온 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따라 다양한 학력 격차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던 장애학생의 학사경고나, 제적, 대학생활 미적응으로 인한 휴학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 학사 경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특례입학 장애학생의 연도별 학사경고

입학 년도	학기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계		
		학생 수 (명)	학사 경고 수 (명)	학사 경고 비율 (%)	학생 수 (명)	학사 경고 수 (명)	학사 경고 비율 (%)	학생 수 (명)	학사 경고 수 (명)	학사 경고 비율 (%)	학생 수 (명)	학사 경고 수 (명)	학사 경고 비율 (%)
1995	1학기	8			13			22	1		43	1	2.3
	2학기	8			13			22	2	9.1	43	2	4.7
	평균	8			13			22			43		3.5
1996	1학기	14	2	14.3	28			54	3	5.6	96	5	5.2
	2학기	14			28			52	2	3.9	94	2	2.1
	계												3.7
1997	1학기	23	5	21.7	42			82	5	6.1	147	10	6.8
	2학기	21	4	19.1	42			78	3	3.9	141	7	4.9
	계												5.9
1998	1학기	31	2	6.5	57	1	1.8	106	10	9.4	194	13	6.7
	2학기	33	3	9.1	59	3	5.1	99	8	8.1	191	14	7.3
	계												7.0
1999	1학기	42	4	9.5	59	3	5.1	124	20	16.1	225	27	12.0
	2학기	38	5	13.2	58	2	3.5	120	22	18.3	216	29	13.4
	계												12.7
2000	1학기	46	8	17.4	61	2	3.3	152	19	12.5	259	29	11.2
	2학기	43	4	9.3	56	2	3.6	150	9	6.0	249	15	6.0
	계												8.6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얻었음

1995년에는 1학기, 2학기를 합해 평균 3.5%, 1996년에는 3.7%, 1997년에는 5.9%가, 1998년에는 7.0%가 학사경고를 받았다. 1999년에는 무려 12.7%가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2000년에는 8.6%가 학사경고를 받았다. 또한 학교를 그만 두는 장애인 역시 해마다 증가하였다. 연도별 장애학생의 제적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연도별 장애학생 제적 현황

	시각				청각				지체				기타				계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1996													2				2
1997													2				2
1998	1								2	2				1			6
1999	2	1	2		1		1			2	1	2					12
2000	1	4	1		3	1	2	1	1	3		1					18
2001		1		1		2	1	1		5	2	2					15

특례입학으로 대학을 들어 온 장애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제적 수도 증가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각 2명의 장애인이 제적되었고, 1998년에는 1996년의 3배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제적되었다. 1999년에는 총 12명의 장애인이 제적되었으며, 2000년에는 18명의 장애인이 제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⁹⁾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연결되어 온 D대학의 이미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순식간에 불명예스럽게 바뀔 수도 있었다. D대학으로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위기적 상황은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지원 부서를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2. 전국 최초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상으로 살펴 본 배경에 의해 2000년 9월 전국 대학 최초로 D대학에 장애학생 지원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다. 전담 부서의 신설은 장애학생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으로부터 학교가 장애학생의 대학 생활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 보장으로 전환은 꾀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고등교육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애학생 전담 부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D대학에서는 이 전담 부서를 장애학생지원센터라고 불렀다. 센터라는 명칭에는 어울리지 않게 배치된 인력은 직원 1명(이○○)과 사무조교 1명뿐이었다. 이○○씨는 교내

9) 이와 같은 특례입학자들의 높은 중도탈락율은 D대학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2000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0개 4년제 대학에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장애학생 974명 중 18.2%인 177명이 학업부진으로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11.7%인 114명은 휴학을 한 경험이 있고, 5.3%인 52명의 학생들은 중도에 이미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양재신, 2000).

사회봉사단 관리까지 겸하고 있었다. 2001년에는 사회봉사단 겸직으로 김○○씨가 추가 배치되었다.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이○○씨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처음에 한 전맹 시각장애인이 날 찾아와서 책을 만들어 달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와 나는 파트너가 되었죠. 처음에 책을 만들 때는 사회봉사단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인터넷으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책 전체를 주기 보다는 책을 갈라서 나눠 주었습니다. 이 일도 만만치 않았는데, 특별장학금을 받는 실무위원(비장애학생)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교재를 제작하는 출판사 702군데에 대학 교재 과일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은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사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갔는데, 전화를 했더니 없다고 해서 무작정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장은 책 한권 만드는데 000원이나 드는데, 당신들이 잘못해서 인터넷에라도 유포되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겠냐며, 그러니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2008. 4 15).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씨는 대단히 열성적으로 일을 했다. 그는 D대학의 사회봉사자 150명과 인터넷 자원봉사자 140명 그리고 관리를 위한 비장애학생 10명 총 300명을 투입하여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약 300여권이 넘는 시각장애인용 도서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씨의 열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낮은 대가를 받고 일한 비장애학생과 자원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나는 그 때 일에 미쳐가지고,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5시 쯤 되어가 집에 갈라카면 일거리를 주시는 거야. 이○○씨는 낮에는 계속 장애학생들 면담하고, 특수교육과 교수님들 찾아다니셨죠. 그리고는 퇴근할 무렵 쯤 ‘자, 이것도 만들어야 하고 이것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씨는 집에를 안 가고 일을 하니깐 나도 같이 일을 했죠. 그 때는 나도 그렇고 이○○씨도 그렇고 뭔가를 창조해야 하는 것에 불이 타올랐어요. 뭔가를 여기서 해야 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벌였죠(2007.10.5).

위의 진술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초기 멤버인 이○○씨와 김○○씨가 노력과 헌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지만, 동시에 처음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인력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고 경리부서에 회계전문가들이 배치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접역사, 수화통역사, 특수교육전공자, 장애인 관련 유경험자들이 배치되는 장애학생지원 부서에 배치되지는 않았다. 물론, 다른 부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들은 하나 둘 체계를 잡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장애 대학생을 위한 최초의 지원모형이 ‘사명감과 헌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자원봉사’로 출발하였다는 ‘사실’은 비장애학생을 위한 학사지원과 장애학생의 학사지원이 다른 위치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초기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변화 과정

지원센터의 변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근무자 변화 양상과 재정지원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원센터에 근무한 직원들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 장애학생지원센터 근무자 현황

연도	소속	소속장	부서장	담당	조교	비고
2000. 9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처장	이○○		1명	
2001. 9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처장	이○○	김○○(사회봉사단 겸직)	2명	
2003. 3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처장	이○○	C○○, D○○,	2명	
2003. 8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처장	A○○	C○○, D○○,	2명	
2004. 3	인성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인성교육원 원장	B○○	C○○, D○○	2명	
2005. 3	총장직속기관 인성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인성교육원 원장	F○○ 자원봉사센터 겸임	C○○, 김○○, 박○○	2명	
2005. 6	총장직속기관 인성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인성교육원 원장	C○○	김○○, 박○○	2명	
2006. 3	총장직속기관 인성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인성교육원 원장	G○○ 자원봉사센터 겸직	H○○, 김○○, 박○○	2명	
2007. 3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팀	학생처장	H○○	김○○, 박○○	2명	
2008.3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팀	학생처장	H○○	I○○, 박○○	3명	

겸직직원은 실질적으로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음. 단, 김○○씨의 경우는 겸직직원이면서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포함함.

2001년 9월 직원 한명, 조교 1명이 추가 배치되었다. 2003년부터 직원 3명, 조교 2

명이 배치되었다. 2008년에는 조교 1명이 추가 배치되었다. 현재 직원 3명, 조교 3명이 일을 전담하고 있다. 조교 중 한명은 시내에 있는 캠퍼스의 장애학생 지원을 담당한다. 겸직을 하는 직원은 실질적으로 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자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거쳐 간 직원은 총 12명이며, 이 중 6개월 이하 근무자는 4명이다(조교 및 겸직 제외). 지원센터를 거쳐 간 직원 중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찍힌' 직원과 승진을 위해 잠시 수고하라는 의미로 배치된 직원까지 있었다(김○○씨와의 인터뷰). 이것은 장애와 관련한 업무는 다른 일에 비해 고생스러운 일이며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 보니 업무의 연계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까지 근무한 직원 중 관련 전공자나 유경험자, 수화통역사나 점역사와 같은 지원과 관련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김○○씨와 박○○씨의 근무경력이 길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다른 부서로 갔다가 다시 돌아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애학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부는 2003년 평가 이전까지 어떤 제재나 개입도 하지 않았고, 재정적인 지원도 2005년부터 이루어졌으므로 학교의 재정 지원은 지원센터의 운영과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장애학생과 관련한 학교의 재정지원 추이는 표 13와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례입학을 실시하면서 D대학에서는 매월 장애학생에게만 복지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장애학생이 주변 도움을 받는 데 적절히 활용하여, 면학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원체제의 정비 보다는 장애학생에게 직접 부여하는 복지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D대학의 장애학생지원 정책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도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립 당시 예산은 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2000년 당시 장애학생 수 288명이므로 2000년도 장애학생 1인당 연간 지원예산은 4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01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 이 당시는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라는 대학 개혁 방안으로 당시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총 300명의 사회 봉사자를 동원하여 시각장애학생 교재를 제작한 당시 정황에 대해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사실'은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 이후 예산은 다시 대폭 축소되었다가, 2005년 교육부에서 도우미 경비를 지원하면서부터 예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지원센터의 직원 현황과 재정지원 추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배치, 직원의 잦은 부서 이동, 게다가 300명에서 200명 되는 장애학생 지원을 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은 장애학생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재정은 복지장학금의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해, 실질적인 장애학생지원 운용 경비가 배정된 것은 2005년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3>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재정 (단위 : 천원)

	장애 학생 복지장학금	지원센터 대응자금	국고지원금
1995			
1996	119,400		
1997	247,250		
1998	195,470		
1999	205,080		
2000	242,240	11,198	
2001	251,013	119,249	
2002	271,420	55,409	
2003	201,397	31,170	
2004	177,467	53,208	
2005	150,450	85,151	121,258
2006	140,080	113,204	196,000
2007	148,552	122,970	218,400
2008	140,553	123,150	238,000

복지장학금의 재정내역은 D대학교(2001)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 신청서, p.10 및 D대학교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연구위원회(2003, 2005, 2008)의 장학지원을 재구성한 것임.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비와 국고지원금의 현황은 지원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임.

V. 결 론

이상으로 D대학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단계는 제한적 입학허용의 시기이다. 해방 이후 고등교육 성립초기부터 1994년 특례입학 실시 이전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의 문헌을 검토하였지만, 그 이전 상황은 1960년대보다 더 열악했으므로, 사실상 제한적 입학허용이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고등교육 성립초기부터라고 해도 무방하다. 1단계의 특징은 대학 입학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대학 입학 거부가 만연했다는 점과 일부 대학의 경우 우수한 장애인의 입학은 허용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은 전무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장애학생의 대학 입학에 대한 배제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동안에도 D대학은 장애인에 대한 배제 없음을 내걸 정도로 장애인의 대학 입학에 우호적이었다.

2단계는 형식적인 기회확대의 시기이다. 1994년 특례입학 실시부터 현재 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2단계의 특징은 국가 주도로 장애인에 대한 특별전형제도가 만들어짐으로서 장애인의 대학 입학 기회는 확대되었지만 1단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단계를 현재까지 설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대학 입학 기회는 허용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고등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D대학은 특례입학제도 실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D대학 역시 장애인의 대학생활을 위해 학교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3단계는 장애학생지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이다. 3단계는 D대학에 장애학생지원 전담부서가 설립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이다. 3단계의 특징은 학교 당국과 교육부의 지원이 본격화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3년, 2005년 2008년에 걸쳐 일선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는 장애학생 도우미 경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최초로 설립된 D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사명감, 헌신, 자원봉사라는 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현재에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지원 실태조사는 장애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대학의 자체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도우미경비 지원은 일선 대학이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제한적이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대한 법률’과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해 처음 언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둘러싼 대학교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곽정란(2003). 한국 장애인운동의 특수교육학적 고찰.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6년도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등 국고지원 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김도현(2007). **차별에 저항하라**. 서울: 박종철 출판사.
 김병하(2004). 특수교육개론」(1963)에 나타난 이태영(李泰榮)의 특수교육관,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5(2), 1-24.
 김성애, 이해균, 박찬웅 (2002).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김주영(2005).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제도와 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
- 김헬레나(2000).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수(2005). 장애인학생을 위한 대학의 재구조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장애와 사회**, 6, 100-114.
- 남지민(2006).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D대학교(1993). D대학교 입학 모집요강.
- D대학교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2003). 2003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보고서.
- D대학교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2005). 2005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보고서.
- D대학교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2008). 2008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보고서.
- 문교부(1967). **문교통계년보**, 서울: 문교부.
- 박옥순(1994). 넓어지는 대학 문(?) - 교육부의 장애우 "대학 특례입학" 발표, 그 허와 실 - 함께걸음 1994년 03월 01일 (화) 01:30:06.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
- 송영욱(1997).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 한국재활재단 편(1997).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사**. 서울 : 양서원, 77-104.
- 신용호(2001). 장애우운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 (2001). **장애우복지개론**. 서울: 나눔의 집, 273-284.
- 신윤동욱(2001). [마이내리티] 강의실은 까마득한 저 위에... 한겨레21 2001년04월03일 제353호.
<http://h21.hani.co.kr/section-021065000/2001/021065000200104030353003.html>
- 안태운(1968) 한국 맹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일연구. **특수교육연구** 1. 1-19.
- 양재신(2000)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26, 40-44.
- 윤점룡, 김주영(200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이후 학내 지원체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동석(1996) [교육]장애우 특례입학 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1996년 01월 01일 (월) 10:29:05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
- 이현준(1995). 차린 것은 그럴듯하나 먹을 음식이 없다-세계화시대의 장애우복지, 1995년 07월 01일 (토) 10:29:35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07.5.25. 법률 843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10 법률 8341호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1989). **장애자복지종합대책**. 서울: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 정립회관 장애자복지연구회 (1988). **장애자관련신문자료집**. 서울: 정립회관.
- 정정진(2004).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특수교육학 연구**, 19(2), 1-23.
- 정정진(2007).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 방안,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8(1), 109-132.
- 조선일보 1975.1.24.2면 [사설] 신체장애자의 진학문제. 대학의 문은 열려야 한다.
- 조한진, 박태웅(1998).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논총**, 15, 1-28.
- 통계청(2007).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 1994.1.7 법률 제4716호.

An Ethnographic Study on History of Higher education for Disabled People

Kwak, Jeong-Ran
Daegu University Docen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istory of higher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 for disabled people in South Korea. To establish this purpose, the writer used analyzing records and interview.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South Korea, entrance into higher education of disabled people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as aspects of support services given to them; first, permitted partially, from the beginning of higher education to 1994, second, the expanding period in formal, after pregenital entrance program conducted, and the last, after established Assistive Office for the disability since 2000 to current. High education for disabled people have proceed from exclusion to inclusion, but support system for disabled people is different from support system for non-disabled people.

Key Words : History of higher education for Disabled People, support service for disabled people

논문 접수: 2009. 2. 1 심사 시작: 2009. 2. 11 게재 확정: 2009. 3. 23